

영등포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3. 4. 2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99호로 2013년 4월 18일 운동규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의 책무를 마련함.(안 제4조)

나.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13년 예산반영

다. 타 자치구 조례 현황 : 강동구, 광진구, 양천구, 서초구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3년 3월 현재 우리구도 11%로 나타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 질병, 가족들로부터 소외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일 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증가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해마다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노인의 4.3%만이 참여하고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대다수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보장 실태에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의 수급자 비율은 77.8%로 우리나라 노인의 약 22.2%는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 일자리 보급,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의 제정이 노인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